



알고계십니까?

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

비상구 등 피난·방화시설 유지관리
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**300만원 이하**의
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비상구 폐쇄·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
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
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.

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

다중이용업소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 문화집회시설,
의료시설, 위락시설

주요위반사례



도어스토퍼 설치



도어클로저 훼손



물건적치



비상구폐쇄

※ 소방시설 등 고장을 미끼로 공갈·협박,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
발견시 119 또는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